

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박정자 의원 발의】



2019. 6. 1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27호로 2019년 6월 5일 박정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친화 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그 밖에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 - 안 제3조제5호와 안 제4조제5항에서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4%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 20%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측되고 있으며, 우리구도 2018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4,906명으로 전체 인구(367,778명) 중 약 15%를 차지하고 있음.
따라서,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, 관련 법령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노인복지법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